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5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최은석 · 조지연 · 김상훈
안철수 · 김태규 · 김은혜
이소희 · 유상범 · 김선교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단체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이 종료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단체 운영과 공익 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경제인

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단체들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 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결핵예방법」 제24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4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1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9. 12. 31.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